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지적재 산권 집행)제30항나호9목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의 의무를 충족함에 있어, 미합중국은 자국 법¹⁾의 관련 규정 및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은 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효한 서면통보와, 나. 자신의 자료가 삭제되거나 무력화되고 자료가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무력화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인에 의한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를 위한 요건을 이 서한에 규정된 대로 채택한다. 유효한 서면통보라 함은 이 서한의 가절에 열거된 요소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통보를 말하며,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라 함은 이 서한의 나절에 열거된 요소에 실질적으로 합치하는 대응통보를 말한다.

가. 저작권²⁾ 소유자 또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하도록 허락된 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적으로 지정된 대표자³⁾에 대한 유효한 서면통보

1) 미합중국 법전 제17권 제512(c)(3)(A)조와 제512(g)(3)조

2) 이 서한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며, “저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대표자의 이름, 물리적 및 전자 주소와 전화번호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의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부분과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접근가능한 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대한민국에 적절한 다른 형식 또는 방식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보를 수령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양해한다.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보가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에 규정된 관련 요건에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그 통보는 실질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통지이어야 하며 이 통보는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 1) 문제제기 당사자(또는 그의 허락받은 대리인)의 신원,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2)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⁴⁾
- 3)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자료로서, 침해하고 있다고 또는 침해 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며, 제거되거나 접근이 무력화되어져야 할 자료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⁵⁾
- 4) 문제가 제기된 방식으로 자료가 사용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문제제기 당사자가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5) 통보내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진술
- 6) 문제제기 당사자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신뢰성의 지표(위증의 처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적 제재 하의 진술과 같은 것)가 있는 진술, 그리고
- 7) 통보하는 인의 서명⁶⁾

나. 실수 또는 자료의 오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

-
- 4)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단일 온라인 사이트상에 있거나, 이에 연결된 복수의 저작물이 단일 통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이트에 있거나 이에 연결된 저작물의 대표적 목록이 제공될 수 있다.
 - 5) 제18.10조제30항나호1목라에 따른 정보검색도구에 관한 통보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참조 또는 링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있는 단일 온라인 사이트상의 상당수의 참조 또는 링크에 관한 통보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 참조 또는 링크를 찾는 데 충분한 정보가 수반된다면, 그 사이트상의 그러한 참조 또는 링크의 대표적 목록이 제공될 수 있다.
 - 6) 전자적 통지의 일부로 전송되는 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된 가입자⁷⁾에 의한 유효한 서면 대응통보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대응통보가 제18.10조제30항나호9목에 규정된 관련 요건에 합치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응통보는 실질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통지이어야 하며, 이 대응통보는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 8) 가입자의 신원, 주소 및 전화번호
- 9) 제거되었거나 그 접근이 무력화된 자료의 확인
- 10) 자료가 제거되었거나 그 접근이 무력화되기 전에 자료가 있었던 위치
- 11) 실수 또는 자료의 오인의 결과로서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었거나 무력화되었다고 가입자가 선의로 믿는다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신뢰성의 지표(위증의 처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적 제재 하의 진술과 같은 것)가 있는 진술
- 12) 가입자가 자신의 주소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 명령의 대상이 됨에 동의한다는 진술, 또는 가입자의 주소가 당사국 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수 있는 당사국 영역의 어떠한 장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침해 협의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법원의 명령의 대상이 됨에 동의한다는 진술
- 13) 가입자가 그러한 모든 소송에서 송달을 접수하겠다는 진술, 그리고
- 14) 가입자의 서명⁸⁾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김 현 종

7) 이 서한의 목적상, “가입자”는 이 서한의 가절에 기술된 유효한 통보의 결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었거나 무력화되어진 인을 지칭한다.

8) 전자적 통지의 일부로 전송되는 서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